



: 2020-05-22

## 서 울 고 등 법 원

### 제 1 7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19나2019762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재근, 권성국, 최윤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윤철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3. 선고 2018가합564538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17.

판 결 선 고 2019. 12. 5.

#### 주 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19. 체결된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

#### 1) 정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8. 7.경 피고에게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8. 8. 31.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를 보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2018. 8. 31. 해지되었다.

#### 2) 인격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이 사건 전속계약상 피고는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를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 D가 원고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을 거듭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고, 원고가 2018. 1.경 및 2018. 5. 11.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2018. 7. 5.까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8. 8. 31.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를 보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2018. 8. 31. 해지되었다.

나.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



: 2020-05-22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이 사건 전속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위반하였다. 즉 위 D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원고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였는데, 원고가 D의 언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는 광고 등의 출연계약을 할 때 원고에게 계약 내용 및 일정을 사전에 설명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고, 원고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원고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기타 제반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매월 원고의 수입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고, 원고는 2018. 8. 31.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를 보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2018. 8. 31. 해지되었다.

2) 위 2018. 8. 31.자 해지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원고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원고를 출연시키는 광고를 촬영한 회사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거론하는 통지문까지 발송하였는바, 피고의 위 1)항과 같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위와 같은 추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19. 7. 9.자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재차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

### 3. 판단

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

가) 인정사실



: 2020-05-22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8. 1. 초경 원고에게 2017년 정산내역을 제공하였고, 2018년 상반기에는 각 분기별로 정산내역을 제공하였는데, 2018년 2분기 정산내역은 2018. 6. 29. 제공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2018년 2분기 정산내역에는, 합계 5,500,000원의 수입에서 미용비 등 지출 648,019원을 공제하면 정산금액이 2,425,990원[= (5,500,000 원 - 648,019원) × 수익분배비율 50%]인데, 다시 여기에서 지난 분기 이월 정산액 -2,936,570원을 공제하여 그 잔액이 -510,58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2018년 2분기 정산내역 중 원고의 수입에는 2018. 6. 8. 피고에게 지급된 원고의 '중국가수 G의 뮤직비디오' 출연료 800,000원 및 2018. 6. 27. 피고에게 지급된 원고의 'H' 웹드라마 출연료 700,000원이 누락되어 있다. 위 '중국가수 G의 뮤직비디오' 출연료는 2018. 7. 정산에 포함되어 정산되었으나, 'H' 웹드라마 출연료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4. 경에야 정산되어 2019. 5. 10. 정산자료가 원고에게 제공되었다.

(4) 피고는 2018. 7. 정산에서, 2018년 2분기 정산 시 정산되었어야 하는 위 '중국가수 G의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비롯하여 2018. 7. 원고의 수입 2,300,000원 중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1,150,000원(= 2,300,000원 × 수익분배비율 50%)에서 2018. 7. 지출된 비용 246,526원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123,263원, 2018년 2분기까지의 이월 정산액 -510,580원 및 사업소득세 등 17,020원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액을 499,137원으로 정산한 후, 2018. 9. 13. 원고에게 499,137원을 지급하



였다.

####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원고의 모든 수입은 일단 피고가 수령하여 매월 말일 정산하는데,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잔액의 50%는 피고에게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2018년 2분기 정산내역에는 '중국가수 G의 뮤직비디오' 출연료 800,000원 및 'H' 웹드라마 출연료 700,000원이 누락되어 있다. 피고는 위 출연료들을 누락한 채 2018년 2분기 말 정산잔액을 -510,58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출연료들을 포함시켜 제대로 정산할 경우, 합계 7,000,000원(= 기재된 수입 5,500,000원 + '중국가수 G의 뮤직비디오' 출연료 800,000원 + 'H' 웹드라마 출연료 700,000원)의 수입에서 미용비 등 지출 648,019원을 공제하고 원고의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정산금액이 3,175,990원[= (7,000,000원 - 648,019원) × 수익분배비율 50%, 원 미만 버림]이고, 다시 여기에서 지난 분기 이월 정산액 -2,936,570원을 공제하면 그 잔액은 239,42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2018. 7. 15.까지 위 239,42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8. 7. 말 또는 2018. 8. 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때까지도 피고는 'H' 웹드라마 출연료 700,000원을 원고에게 정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그 중 절반인 3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른 정산의무를 위반하였다.



: 2020-05-22

피고는, 2018. 7. 31. 기존 회계담당 직원이 퇴사하여 2018. 8. 6. 새 회계담당 직원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수로 위 출연료들이 누락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이 7년인 계속적 계약이고, 원고도 피고의 성실한 매니지먼트 하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야 하는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성실한 수익 분배는 신뢰관계의 존속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의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피고가 부담하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역시 피고의 정산의무와 결부된 중요한 의무라 봄이 상당하고, 이는 정산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다.

이 사건 전속계약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입이 발생된 후 1개월 단위로 분배할 금원을 정산하여 분배할 금원이 있을 경우 이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정산금의 유무 및 금액을 상호 확인하기 위하여 정산자료 또한 1개월 단위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년 정산자료는 12개월 치를 한꺼번에 둑어 2018. 1. 초에, 2018년 상반기 정산자료는 각 분기별로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7조 제6항에 따른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4)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에게 14일간의 유예



: 2020-05-22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8. 7. 초부터 2018. 8. 31. 사이에 피고에게 정산 또는 정산자료 제공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피고의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인격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

이 사건 전속계약 제2조 제2항에서 피고가 원고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 D가 원고에게 욕설이 섞이거나 원고를 무시하는 투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인격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전속계약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인격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에게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갑 제2, 5, 6,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8. 1.경 또는 2018. 5. 11.경 피고에게 인격권 보호의무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계다가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7. 5. 자로 위 D를 원고에 대한 매니저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인격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에 피고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이 피고의 인격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 1) 관련 법리

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원고의 모든 수입은 일단 피고가 수령한 다음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잔액의 50%는 피고에게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매달 일정한 날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

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원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참조).

##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의무, 정산자료 제공의무, 인격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이 사건 전속계약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3자와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원고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갑 제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 2020-05-22

2018. 8. 15. 촬영 예정인 I 광고에 원고가 출연하는 내용의 계약을 교섭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다가 촬영 이틀 전인 2018. 8. 13.에서야 출연이 확정되었다면서 촬영을 준비할 것을 통보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 무렵부터의 감기로 인한 컨디션 악화로 위 I 광고를 촬영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전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의무, 정산자료 제공의무, 인격권 보호의무, 사전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여러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의무, 정산자료 제공의무, 인격권 보호의무, 사전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8. 8. 3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8. 8. 31.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나아가 갑 제20, 21, 2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18. 8. 31. 이후 피고는 원고의 출연을 원하는 방송·광고업체 등과의 계약 교섭 및 계약 체결 등 원고의 연예 활동을 위한 지원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출연을 원하는 방송·광고업체 등으로부터 출연 여부를 원고에게 직접 문의하는 연락을 다수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아니하고 2019. 1. 25. 원고가 출연하였던 'J' 광고의 방영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경에도 K의 소주 신제품 광고 출연제의를 승낙하고 광고를 촬영한 사실, 피고는 2019. 6. 13. 주식회사 L에게, 원고가



: 2020-05-22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위 회사의 'K' 광고에 출연하였다며 출연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18. 8. 31.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정산의무, 정산자료 제공의무, 인격권 보호의무, 사전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더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18. 8. 31. 이후 피고는 원고의 연예활동을 위한 지원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도 피고와 별개로 연예활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불화 내지 다툼이 대외적으로 공표된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늦어도 2019. 6. 13.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연예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재차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19. 7. 9.자 항소이유서가 그 다음날인 2019. 7.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늦어도 원고의 2019. 7. 10.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 다. 소결

이 사건 전속계약은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하여, 2018. 8. 31. 또는 2019. 7. 1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가 원고의 2018. 8. 31.자 또는 2019. 7. 10.자 해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 2020-05-22

이 사건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정

판사 허양윤